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 정정공고 내용

구분	정정 전(47P)					정정 후(47P)				
[제조사명 정정] ② 주방/드레스룸 빌트인 가전	주택형 (약식표기)	품목	제조사명	제품명	공급금액	주택형 (약식표기)	품목	제조사명	제품명	공급금액
	전타입	빌트인 정수기	LG전자	CP-AAS100BS	1,400,000	전타입	빌트인 정수기	쿠쿠	CP-AAS100BS	1,400,000
[설치 위치 정정] ④ 침실 불박이장	주택형 (약식표기)	위치	제품명		공급금액	주택형 (약식표기)	위치	제품명		공급금액
	74A	침실2	측면 미니화장대형 불박이장(의류 살균탈취기 포함) / 약 1.5m		2,100,000	74A	침실3	측면 미니화장대형 불박이장(의류 살균탈취기 포함) / 약 1.5m		2,100,000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4.04.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00-4935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자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대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과밀억제권역)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4.04.(금)	2025.04.14.(월)	2025.04.15.(화)	2025.04.16.(수)	2025.04.22.(화)	2025.04.24.(목) ~ 2025.04.27.(일)	2025.05.06.(화) ~ 2025.05.08.(목)

2

공통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600-4935) 및 공식 홈페이지(<https://두산위브더제니스평내호평역n49.com>)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에 따른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에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에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3.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0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치,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우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에 의거 청약접수 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전용면적 60㎡이하 및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85㎡초과 주택의 경우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두산위브더제니스평내호평역n49.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효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효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중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점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유형에 상관 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불법행위(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중 특별공급주택 자격을 갖춘 자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 (단, 특별공급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 일반공급의 경우 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합니다. (단, 재당첨 제한,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및 부적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점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점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점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점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점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출하는 서류 중 제2항제2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항 제7호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3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4.04.(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한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 서류접수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일 정	2025.04.14.(월)	2025.04.15.(화)	2025.04.16.(수)	2025.04.22.(화)	2025.04.24.(목) ~ 2025.04.27.(일) 4일간 10:00 ~ 16:00	2025.05.06.(화) ~ 2025.05.08.(목) 3일간 10:00 ~ 16:00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PC·모바일) 청약홈	•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건본주택 (주소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59-10) • 문의 : ☎1600-4935 ※ 자격확인서류 및 예약관련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참고 ※ 접수된 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남양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또는 시공사)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시공사)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또는 시공사)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시공사)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c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트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본 주택 「주택법」 제64조제1항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남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 ※ 단,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합니다.)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청 주택과 - 7470 호(2025.04.0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660-6번지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5층, 지상 49층, 3개동 총 5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98세대(기관추천 54세대, 다자녀가구 54세대, 신혼부부 125세대, 노부모부양 16세대, 생애최초 49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9년 5월 예정(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104	01	074.9915A	74A	74.9915	29.1615	104.1530	49.6670	153.8200	12.1552	82	8	8	19	2	7	44	38	2
	02	084.9515A	84A	84.9515	34.8245	119.7760	56.2635	176.0395	13.7696	230	23	23	53	7	21	127	103	6
	03	084.8748B	84B	84.8748	33.6401	118.5149	56.2126	174.7275	13.7572	164	16	16	38	5	15	90	74	4
	04	084.9827C	84C	84.9827	33.6030	118.5857	56.2841	174.8698	13.7747	66	7	7	15	2	6	37	29	2
	05	166.6469P	166P	166.6469	77.9544	244.6013	110.4199	355.0212	27.0169	2	-	-	-	-	-	-	2	-
	06	171.9426P	171P	171.9426	73.6646	245.6072	113.8779	359.4851	27.8699	2	-	-	-	-	-	-	2	-
	07	173.9202P	173P	173.9202	81.5202	255.4404	115.1877	370.6281	28.2017	2	-	-	-	-	-	-	2	-
합 계										548	54	54	125	16	49	298	250	14

■ 주택형 표시안내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청약시)	074.9915A	084.9515A	084.8748B	084.9827C	166.6469P	171.9426P	173.9202P
약식표기 (건본주택 등)	74A	84A	84B	84C	166P	171P	173P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전용면적 기준)'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홍보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대지비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는 총 공급세대(548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본 아파트는 주상복합건축물로서 6층이 최저층에 해당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계약시)	2차 (2025.06.09)	1차(10%) 2026.02.23.	2차(10%) 2026.12.22.	3차(10%) 2027.06.22.	4차(10%) 2027.12.22.	5차(10%) 2028.04.24.	6차(10%) 2028.08.22.	입주지정일
74A	82	102동 3호 103동 3호	6층	2	92,998,400	491,001,600	-	584,000,000	10,000,000	4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175,200,000
			7~9층	6	96,024,100	506,975,900	-	603,000,000	10,000,000	5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180,900,000
			10~14층	10	98,253,500	518,746,500	-	617,000,000	10,000,000	5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185,100,000
			15~19층	10	100,164,400	528,835,600	-	629,000,000	10,000,000	5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188,700,000
			20~24층	10	102,075,300	538,924,700	-	641,000,000	10,000,000	5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192,300,000
			26~29층	8	105,101,000	554,899,000	-	660,000,000	10,000,000	5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198,000,000
			30~34층	10	107,171,100	565,828,900	-	673,000,000	10,000,000	5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201,900,000
			35~39층	10	109,241,300	576,758,700	-	686,000,000	10,000,000	5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205,800,000
			40~44층	10	111,152,200	586,847,800	-	698,000,000	10,000,000	5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209,400,000
			45~47층	6	112,266,900	592,733,100	-	705,000,000	10,000,000	6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211,500,000
84A	230	101동 1호4호 102동 1호5호 103동 1호5호	6층	6	103,827,000	548,173,000	-	652,000,000	10,000,000	5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195,600,000
			7~9층	18	107,330,400	566,669,600	-	674,000,000	10,000,000	5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202,200,000
			10~14층	30	109,719,000	579,281,000	-	689,000,000	10,000,000	5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206,700,000
			15~19층	30	111,948,400	591,051,600	-	703,000,000	10,000,000	6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210,900,000
			20~24층	30	114,177,900	602,822,100	-	717,000,000	10,000,000	61,70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215,100,000
			26~29층	24	117,681,200	621,318,800	-	739,000,000	10,000,000	6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221,700,000
			30~34층	30	119,910,600	633,089,400	-	753,000,000	10,000,000	6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225,900,000
			35~39층	30	122,140,100	644,859,900	-	767,000,000	10,000,000	6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230,100,000
			40~44층	20	124,369,500	656,630,500	-	781,000,000	10,000,000	68,100,000	78,100,000	78,100,000	78,100,000	78,100,000	78,100,000	78,100,000	234,300,000
			45~47층	12	125,484,200	662,515,800	-	788,000,000	10,000,000	6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236,400,000
84B	164	102동 2호4호 103동 2호4호	6층	4	102,871,500	543,128,500	-	646,000,000	10,000,000	5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193,800,000
			7~9층	12	106,215,700	560,784,300	-	667,000,000	10,000,000	5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200,100,000
			10~14층	20	108,604,300	573,395,700	-	682,000,000	10,000,000	5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204,600,000
			15~19층	20	110,833,700	585,166,300	-	696,000,000	10,000,000	5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208,800,000
			20~24층	20	113,063,200	596,936,800	-	710,000,000	10,000,000	6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213,000,000
			26~29층	16	116,407,300	614,592,700	-	731,000,000	10,000,000	6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219,300,000
			30~34층	20	118,636,700	626,363,300	-	745,000,000	10,000,000	6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223,500,000
			35~39층	20	120,866,100	638,133,900	-	759,000,000	10,000,000	6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227,700,000

84C	66	101동 2호3호	40~44층	20	123,254,800	650,745,200	-	774,000,000	10,000,000	6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232,200,000
			45~47층	12	124,369,500	656,630,500	-	781,000,000	10,000,000	68,100,000	78,100,000	78,100,000	78,100,000	78,100,000	78,100,000	78,100,000	234,300,000
			6층	2	102,871,500	543,128,500	-	646,000,000	10,000,000	5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193,800,000
			7~9층	6	106,215,700	560,784,300	-	667,000,000	10,000,000	5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200,100,000
			10~14층	10	108,604,300	573,395,700	-	682,000,000	10,000,000	5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204,600,000
			15~19층	10	110,833,700	585,166,300	-	696,000,000	10,000,000	5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208,800,000
			20~24층	10	113,063,200	596,936,800	-	710,000,000	10,000,000	6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213,000,000
			26~29층	8	116,407,300	614,592,700	-	731,000,000	10,000,000	6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219,300,000
			30~34층	10	118,636,700	626,363,300	-	745,000,000	10,000,000	6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223,500,000
			35~39층	10	120,866,100	638,133,900	-	759,000,000	10,000,000	6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227,700,000
166P	2	101동 1호2호	40층	2	318,328,600	1,527,883,090	152,788,310	1,999,000,000	10,000,000	189,900,000	199,900,000	199,900,000	199,900,000	199,900,000	199,900,000	199,900,000	599,700,000
171P	2	102동 1호 103동 1호	48층	2	325,813,100	1,563,806,270	156,380,630	2,046,000,000	10,000,000	194,600,000	204,600,000	204,600,000	204,600,000	204,600,000	204,600,000	204,600,000	613,800,000
173P	2	102동 2호 103동 2호	48층	2	336,800,900	1,616,544,630	161,654,470	2,115,000,000	10,000,000	201,500,000	211,500,000	211,500,000	211,500,000	211,500,000	211,500,000	211,500,000	634,500,000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착용 주택으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음)
- 공급금액은 1차계약금,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됨)
-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원본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본 제출 불가)**
- 전산검색 결과 부정한 당첨자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74A	84A	84B	84C	166P	171P	173P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4	3	1	-	-	-	10
	장기복무 제대군인	1	3	2	1	-	-	-	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4	2	1	-	-	-	8
	중소기업 근로자	1	4	3	2	-	-	-	10
	장애인	경기도	4	3	1	-	-	-	10
		서울특별시	3	2	1	-	-	-	7
		인천광역시	-	1	1	-	-	-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4	12	8	4	-	-	-	28
	수도권(서울, 인천) 거주자(50%)	4	11	8	3	-	-	-	26
신혼부부 특별공급		19	53	38	15	-	-	-	12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7	5	2	-	-	-	16
생애최초 특별공급		7	21	15	6	-	-	-	49
합 계		44	127	90	37	-	-	-	29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2.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남양주시/경기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유의사항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청약이 불가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 불가로 부적격될 수 있음)

5-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구 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태아, 입양자녀 포함)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① 지역 : 해당지역 및 경기도 거주자 50%(남양주시 및 경기도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남양주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달된 주택 포함)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 경기도 우선공급 세대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미달된 물량이 있을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접수 결과 미달 물량 발생 시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 경기도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남양주시 거주자 또는 경기도 거주자는 기타지역에 배정된 세대수 내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우선 공급 미적용

② 배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청약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 및 부정합 방법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 합니다.[임신인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녀는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 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5-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12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태아, 입양자녀 포함) → ⑤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남양주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남양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4.0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비고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계속적인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기 전인 경우라면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남양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5-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4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임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본 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단독세대는 청약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 <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 <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 <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 <td rowspan="2">5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r> <td>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body>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남양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4.0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주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계속적인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기 전인 경우라면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구분

대상자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2.2.,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특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남양주시/경기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남양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③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입주자저촉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촉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명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 <tr> <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 <tr> <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 </tbody> </table>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유의사항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가점제 입주자 선정시 유의사항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 방식 - 주택형태로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 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입주자저축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5.04.14.(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건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건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59-10번지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건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25.04.15.(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5.04.16.(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판」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4.22.(화) ~ 2025.05.01.(목) /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4.22.(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계약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 일시 : 2025.04.22.(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5.05.06.(화) ~ 2025.05.08.(목), 3일간 (10:00~16:00) • 장소 :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견본주택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59-10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 및 유의사항

구 분	선 정 방 법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단,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0%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며,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합니다.(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별도 통지)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규제지역내 청약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당첨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5.04.24.(목) ~ 2025.04.27.(일) (4일간), 10:00~16:00	·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건본주택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59-10번지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 서류는 반드시 지참
예비입주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04.)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공통 유의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 동호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0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인감증명서 등 본인/대리 발급이 구분되는 서류의 경우 본인 발급용이 아닌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제출하여야합니다.(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소명자료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 (특별공급 I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무주택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 구분 : 본인발급,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 : 두산건설(주)]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주택소유여부 확인) ※ 특별공급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청약이 불가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 불가로 부적격될 수 있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본인과의 관계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등 혼인 관계 확인(본인 및 배우자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 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본인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제외)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계속하여 90일 초과) 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중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서류 : ① 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인정 안됨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 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기록대조일을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배점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3세대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에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미등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확인 가능해야 함) •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 건본주택에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등)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배우자	•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순위 청약자 해당)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일반공급으로 신청한 해당 자녀(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확인 가능해야 함) •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일 현재, 직장+지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아래표-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비사업자확인 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원은 전원 인증서(공동/금융) 준비 필수
	○		자산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 건본주택에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등)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신청자의 동일 등본상 등재된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배우자	•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신생아 우선공급/일반공급으로 신청한 해당 자녀(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확인 가능해야 함) • 출산 이행 확인각서(양식) 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일 현재, 직장+지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아래표-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비사업자확인 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청약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서류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 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원은 전원 인증서(공동/금융) 준비 필수
		○	자산입증서류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청약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아래표-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시만 인정)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의 신청한 경우 - 건본주택에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일반공급 (가점제당첨자, 가점제예비입주 자)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시만 인정)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공동주택자격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주체가 증빙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불가) 및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I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연말정산 이후인 경우)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소득금액증명 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②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I 간이과세자 I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사업증명원) 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이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 계속적인 법인대표자의 경우 ①과 ②를 모두 제출하여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①,②,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계속적인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기 전인 경우라면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	①② 해당직장/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세무 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4.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견본주택 비치

	② 사실증명서 (소득사실 없음을 입증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는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통산 5년의 납부실적)이며,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재직직장)에게서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해당자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사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시가 확인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내역”을 발급받아 건물시가를 확인가능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kras.go.kr)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발급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 발급방법: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위택스(www.wetax.go.kr)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천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 **보유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 :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화면 캡처본 출력 후 제출 (단, 공동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해당 화면을 구현하여야 인정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해당 시청, 구청,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등·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 전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2025.05.06.(화) ~ 2025.05.08.(목) 10:00 ~ 16:00 (3일간)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견본주택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59-10 ※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홈페이지(https://두산위브더제니스평내호평역n49.com)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1600-4935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784271	신영부동산신탁(주)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 불가)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등·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정당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계약용(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 / 제출처:두산건설(주)]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본인	「인지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 아파트 공급계약서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계약자 부담액 : 10억원 이하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17만5천원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 발코니 확장계약서 수입인지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계약자 부담액 : 3천만원 이하 1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만5천원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 수입인지 구입처 1.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2.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홈페이지 서식 게시)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비 및 유상옵션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상일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필요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또는 시공사)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시공사)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또는 시공사)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시공사)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c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 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 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건본주택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1.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의2. 제28조 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1.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기타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추가선택품목(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인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 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월 이자납입일까지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월 이자납입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법인은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을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가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월 이자납입일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월 이자납입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에 대한 공급대금 및 연체료 등을 완납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주체 대표사인 센트럴엔49피에프브이 주식회사로서 시행사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과 의무는 센트럴엔49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게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계획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리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tr><td>조항</td><td>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d><td>주거전용면적</td><td>수도권</td><td>비수도권</td></tr><tr><td>제53조 제9호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tr><td rowspan="3">제53조 제9호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tr><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tr><td>도시형 생활주택</td></tr></table>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 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 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 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 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주택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별표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남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 ※ 단,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 청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당사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입주예정일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의 경우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입주예정일 : 2029년 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샤워실 등), 스크린골프, 돌봄센터, 라운지카페, 주민커뮤니티, 작은도서관 등),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으로 구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① 발코니 확장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74A	21,500,000	2,150,000	19,350,000	
84A	24,800,000	2,480,000	22,320,000	
84B	24,500,000	2,450,000	22,050,000	
84C	24,500,000	2,450,000	22,050,000	
166P	50,500,000	5,050,000	45,450,000	
171P	50,700,000	5,070,000	45,630,000	
173P	52,700,000	5,270,000	47,430,000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할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일괄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의 위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0.2.18. 개정 시행)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자재발주, 공정관리 등의 사유로 변경계약 등은 불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 부의 외부창호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창호 및 도어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침실 발코니(타입별 침실 발코니 위치는 상이)의 경우 발코니 외측에는 단창호가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고 이에 따른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방 발코니의 경우 내부에 터닝도어, 외부에 이중창호)
- 발코니 비확장(기본형) 선택 시 발코니 외부창호는 단창호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설치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 등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환기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가 발코니 확장 세대인 경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벽 및 천장, 바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의 면적 및 높이가 축소될 수 있고, 발코니 출입 창호 하부턱이 설치되어 창호 높이가 축소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에 인접한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의 발코니 벽 및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의 면적 및 높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인접 세대의 발코니 확장 선택 유무는 통보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 등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본공사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시공함으로써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되어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시공할 경우 난방장비 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조적벽체 또는 경량벽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색상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의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창호 설치 기준은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공사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외부창호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크기,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창호 주변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해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784287	신영부동산신탁(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I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일부는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선택 가능한 품목입니다.

①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제조사명	선택안	설치위치 및 수량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 10%(계약시)	잔금 90%(입주시)	
74A	LG전자·삼성전자	선택1	[2개소] 거실 + 침실1	3,830,000	383,000	3,447,000	- 택1
		선택2	[4개소]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6,700,000	670,000	6,030,000	
84A, 84B, 84C	LG전자·삼성전자	선택1	[2개소] 거실 + 침실1	3,940,000	394,000	3,546,000	- 택1
		선택2	[4개소]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7,240,000	724,000	6,516,000	
166P	LG전자·삼성전자	선택1	[3개소] 거실(2개소) + 침실1	6,040,000	604,000	5,436,000	- 택1
		선택2	[6개소] 거실(2개소)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11,340,000	1,134,000	10,206,000	

171P	LG전자·삼성전자	선택1	[3개소] 거실(2개소) + 침실1	6,450,000	645,000	5,805,000	- 택1
		선택2	[6개소] 거실(2개소)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12,060,000	1,206,000	10,854,000	
173P	LG전자·삼성전자	선택1	[3개소] 거실(2개소) + 침실1	6,450,000	645,000	5,805,000	- 택1
		선택2	[6개소] 거실(2개소)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12,060,000	1,206,000	10,854,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하 시스템에어컨) 선택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아파트 공급 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계약은 계약자가 별도 계약하는 추가선택 사항이며,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타입별 유니트에는 LG전자 또는 삼성전자 제품이 전시용품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타입별 설치 위치 및 수량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디자인 및 사이즈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및 침실1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냉매매립 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 비용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냉매매립 배관(거실, 침실1) 등의 미설치로 인한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 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크기는 본공사 시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시스템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냉매박스, 냉매매립 배관 및 에어컨용 전기콘센트 설치의 제외됩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박스, 냉매매립 배관, 에어컨용 전기콘센트 등 설치공사 비용이 차감되어 산정된 가격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계약자가 별도로 설치하는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무선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설치 부위의 천장 위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모델, 사양 등은 별도의 유상옵션 행사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제품의 품질 및 생산중단 시 동급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유상옵션 행사 시 확인하신 사양으로 향후 설치될 예정이며, 제품의 품질 및 생산중단 등이 없을 경우 유상옵션 행사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이오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해당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계약자와 시공사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설치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운전시 실외기실 외부 그릴이 항상 열려 있는지 확인 후 운전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는 상태의 문제 발생시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실외기 루버의 프레임과 루버 크기, 두께, 형태, 색상, 재질, 하드웨어, 설치위치, 손잡이 디자인, 사양,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 그릴의 색상은 외관을 위해 평형별, 층수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은 유상옵션 계약기간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하며, 시공상의 이유로 계약체결 후 추가 계약 또는 해약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천장형 냉매 배관이 설치되며,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기구 위치 및 기타 시공 여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펜트하우스(166P, 171P, 173P) 세대는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총 3대의 실외기가 설치되며, 실외기 1대(거실·침실1 용)만 월패드를 통한 통신연결되어 월패드를 통한 시스템에어컨 제어는 거실 및 침실1만 가능합니다. (단, LG전자 및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전체 실의 시스템에어컨 제어가 가능함)

② 주방/드레스룸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VAT 포함]

주책형 (약식표기)	품목	선택	제조사명	제품명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전타입	냉장고 + 냉동고 + 김치냉장고 + 측면 인출식 수납장	선택1	삼성전자	RR40C7995AP + RZ34C7965AP + RQ34C7945AP I 비스포크	7,800,000	780,000	7,020,000	- 택1
		선택2	LG전자	BC1L2AA + BC1F2AA + BC1K3AA I 오브제	7,000,000	700,000	6,300,000	
	빌트인 인덕션	선택1	삼성전자	NZ63B5056AK	1,300,000	130,000	1,170,000	- 택1
		선택2	LG전자	BEI3ASB4BI	1,300,000	130,000	1,170,000	
	빌트인 전기오븐	선택1	삼성전자	NQ50T8539BK	950,000	95,000	855,000	- 택1

	빌트인 식기세척기	선택2	LG전자	MZ941CLCAT	850,000	85,000	765,000	- 택1
		선택1	삼성전자	DW80F71Y1SEW	1,300,000	130,000	1,170,000	
		선택2	LG전자	DIE6PT	1,800,000	180,000	1,620,000	
	빌트인 정수기	선택1	LG전자	CP-AAS100BS	1,400,000	140,000	1,260,000	
74A 84A, 84B, 84C 166P, 171P 173P	빌트인 제습기	선택1	코스텔	[1개소] CDD 600B	1,020,000	102,000	918,000	
				[3개소] CDD 600B	3,060,000	306,000	2,754,000	

- 주방/드레스룸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품목 선택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한 품목이며, 타입별 선택 가능 품목이 상이합니다.
- 주방/드레스룸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공급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방/드레스룸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계약은 계약자가 별도 계약하는 추가 선택사항이며, 주방 빌트인 가전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방/드레스룸 빌트인 가전의 모델 및 사양, 디자인, 제조사 등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 또는 동급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안내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빌트인 가전 미선택 시 수납공간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안내 이미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빌트인 가전 선택에 따른 공급금액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품목의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주방/드레스룸 빌트인 가전은 선택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전기오븐, 빌트인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수납장이 설치되어 콘센트, 배관 및 배선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빌트인 제습기 선택 시 배수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빌트인 제습기 선택 시 무선리모컨(대당 1개)이 제공되며, 사용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현관 중문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위치	제품명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74A	현관	3연동 슬라이딩 도어	2,200,000	220,000	1,980,000	
84A-84B-84C, 166P, 171P, 173P		스윙도어	2,200,000	220,000	1,980,000	

- 현관 중문 유상옵션 금액은 아파트 공급 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유상옵션 계약은 계약자가 별도 계약하는 추가 선택사항이며, 현관 중문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관 중문의 모델 및 사양, 디자인, 제조사 등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 또는 동급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안내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침실 불박이장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위치	제품명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74A	침실2	측면 미니화장대형 불박이장(의류 살균탈취기 포함)	2,100,000	210,000	1,890,000	
84A	침실3	측면 미니화장대형 불박이장(의류 살균탈취기 포함)	2,300,000	230,000	2,070,000	
84B-84C	침실2	측면 미니화장대형 불박이장(의류 살균탈취기 포함)	2,300,000	230,000	2,070,000	

- 침실 불박이장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한 품목이며, 반드시 설치 위치를 확인 후 침실 불박이장 유상옵션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불박이장 유상옵션 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침실 불박이장 유상옵션 계약은 계약자가 별도 계약하는 추가 선택사항이며, 침실 불박이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침실 불박이장의 사양, 디자인 등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 또는 동급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안내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불박이장 내부 의류 살균탈취기 기능은 특정 제품(스타일러, 에어드레서 등)과 상이하며, 견본주택 내 실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불박이장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⑤ ZENITH UP&UP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위치	선택	제품명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시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74A	거실	선택1	유럽산 대형 아트월 타일(600*1200) + 현관·거실·복도 벽 일부 디자인 벽판넬 + 대형 월패드(24인치) + 거실·침실1 감성조명	6,200,000	620,000	5,580,000	
	주방	선택2	세라믹 타일(상판·벽) + 독립형 글라스 후드 + 상부 유리플랩장 + 13인치 주방TV + 액세서리 업그레이드(라인조명, 대형싱크볼, 센서형 절수수전)	8,700,000	870,000	7,830,000	
	공용욕실·부부욕실	선택3	외산 비데일체형 양변기 + 외산 수전·도기 + 액세서리 업그레이드(수건걸이, 매립휴지걸이, 타올걸이 겸용 사각선반)	4,300,000	430,000	3,870,000	
84A	거실	선택1	유럽산 대형 아트월 타일(600*1200) + 현관·거실·복도 벽 일부 디자인 벽판넬 + 대형 월패드(24인치) + 거실·침실1 감성조명	7,000,000	700,000	6,300,000	
	주방	선택2	세라믹 타일(상판·벽) + 독립형 글라스 후드 + 상부 유리플랩장 + 13인치 주방TV + 액세서리 업그레이드(라인조명, 대형싱크볼, 센서형 절수수전)	8,200,000	820,000	7,380,000	
	공용욕실·부부욕실	선택3	외산 비데일체형 양변기 + 외산 수전·도기 + 액세서리 업그레이드(수건걸이, 매립휴지걸이, 타올걸이 겸용 사각선반)	4,300,000	430,000	3,870,000	
84B	거실	선택1	유럽산 대형 아트월 타일(600*1200) + 현관·거실·복도 벽 일부 디자인 벽판넬 + 대형 월패드(24인치) + 거실·침실1 감성조명	8,900,000	890,000	8,010,000	
	주방	선택2	세라믹 타일(상판·벽) + 독립형 글라스 후드 + 상부 유리플랩장 + 13인치 주방TV + 액세서리 업그레이드(라인조명, 대형싱크볼, 센서형 절수수전)	8,400,000	840,000	7,560,000	
	공용욕실·부부욕실	선택3	외산 비데일체형 양변기 + 외산 수전·도기 + 액세서리 업그레이드(수건걸이, 매립휴지걸이, 타올걸이 겸용 사각선반)	4,300,000	430,000	3,870,000	
84C	거실	선택1	유럽산 대형 아트월 타일(600*1200) + 현관·거실·복도 벽 일부 디자인 벽판넬 + 대형 월패드(24인치) + 거실·침실1 감성조명	7,000,000	700,000	6,300,000	
	주방	선택2	세라믹 타일(상판·벽) + 독립형 글라스 후드 + 상부 유리플랩장 + 13인치 주방TV + 액세서리 업그레이드(라인조명, 대형싱크볼, 센서형 절수수전)	8,200,000	820,000	7,380,000	
	공용욕실·부부욕실	선택3	외산 비데일체형 양변기 + 외산 수전·도기 + 액세서리 업그레이드(수건걸이, 매립휴지걸이, 타올걸이 겸용 사각선반)	4,300,000	430,000	3,870,000	
166P 171P 173P	거실	선택1	유럽산 대형 아트월 타일(600*1200) + 현관·거실·복도 벽 일부 디자인 벽판넬 + 대형 월패드(24인치) + 거실·침실1 감성조명	17,000,000	1,700,000	15,300,000	
	주방	선택2	세라믹 타일(상판·벽) + 독립형 글라스 후드 + 상부 유리플랩장 + 13인치 주방TV + 액세서리 업그레이드(라인조명, 대형싱크볼, 센서형 절수수전)	15,000,000	1,500,000	13,500,000	
	공용욕실·부부욕실	선택3	외산 비데일체형 양변기 + 외산 수전·도기 + 액세서리 업그레이드(수건걸이, 매립휴지걸이, 타올걸이 겸용 사각선반)	12,000,000	1,200,000	10,800,000	

- ZENITH UP&UP 유상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 ZENITH UP&UP 유상옵션 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ZENITH UP&UP 유상옵션 계약은 계약자가 별도 계약하는 추가 선택사항이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ZENITH UP&UP 옵션 마감재는 본공사 시 원자재의 수급에 따라 색상, 패턴, 나누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등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안내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ZENITH UP&UP 거실 유상옵션 선택 시 마감 자재 공사로 인한 복도 폭이 일부 감소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등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안내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ZENITH UP&UP 거실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침실1 주등은 색온도 및 밝기 조절이 가능한 등기구로 설치되며, 색온도 및 밝기 조절은 거실 주등은 통합 스위치, 안방 주등은 리모컨(별도 제공)을 통해 제어가 가능합니다.
- ZENITH UP&UP 거실 유상옵션 미선택 시 거실 아트월 포세린타일(400X800,가로패턴), 복도·현관·주방 일부·거실 벽지마감 등으로 시공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안내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ZENITH UP&UP 주방 유상옵션 미선택 시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상판·도기질 벽타일, 주방 일반 싱크볼 외 기본 액세서리 등으로 시공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안내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창호 단열필름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위치	제품명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74A	전실	단열필름 세라믹50	2,200,000	220,000	1,980,000	
84A			2,500,000	250,000	2,250,000	
84B			2,400,000	240,000	2,160,000	
84C			3,000,000	300,000	2,700,000	
166P			7,400,000	740,000	6,660,000	
171P			10,600,000	1,060,000	9,540,000	
173P			12,400,000	1,240,000	11,160,000	

- 창호 단열필름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 창호 단열필름 유상옵션 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는 별도로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창호 단열필름 유상옵션 계약은 계약자가 별도 계약하는 추가 선택사항이며, 창호 단열필름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창호 단열필름의 사양 등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 또는 동급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옵션 행사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⑦ 안전·방범 방충망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위치	제품명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74A	전실	안전방충망 (0.4MM / 16MESH)	2,300,000	230,000	2,070,000	
84A			3,500,000	350,000	3,150,000	
84B			2,800,000	280,000	2,520,000	
84C			2,800,000	280,000	2,520,000	
166P			5,100,000	510,000	4,590,000	
171P			9,000,000	900,000	8,100,000	
173P			5,900,000	590,000	5,310,000	

- 안전·방범 방충망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 안전·방범 방충망 유상옵션 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는 별도로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전·방범 방충망 유상옵션 계약은 계약자가 별도 계약하는 추가 선택사항이며, 안전·방범 방충망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방범 방충망의 사양 등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 또는 동급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옵션 행사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⑧ 발코니 탄성코트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위치	제품명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전평형	전실	하이글래스 탄성코트	900,000	90,000	810,000	

- 발코니 탄성코트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 발코니 탄성코트 유상옵션 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탄성코트 유상옵션 계약은 계약자가 별도 계약하는 추가 선택사항이며, 발코니 탄성코트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탄성코트의 사양 등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 또는 동급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옵션 행사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⑨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관련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일부는 발코니 확장 선택 계약자에 한하여 추가 선택(유상옵션)이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공급계약 및 공급금액(계약금 등) 납부일정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아파트 공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 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적용,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제시된 제품은 계약자 본인이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이미지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 및 제품 등을 발주해야 하므로 해당 공사의 착수 이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공사비(부가세 포함)는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⑦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784306	신영부동산신탁(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I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공통 일반사항	• 아파트 명칭은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아파트 명칭 및 팻네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동·호수의 표기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등은 별도의 분양 및 운영시설로서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주차장 등의 시설을 구조적으로 공유하고 있어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은 불가합니다. • 분양홍보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 등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현장답사 등 사전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본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면에 명기되는 면적, 치수 등은 실제 시공 과정에서 일부 경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층간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사업 부지면적 등은 법령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대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되, 위치의 지정이나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등 시설에 따라 다른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 수익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세대별 면적분할이나 위치지정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경계 및 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풍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주지연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요구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시행인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에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의2(2017.10.19 시행)에 따른 표시(「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표시) - 진도MMI 등급 VII (최대지반가속도: 0.204g)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에 대한 금원 확보와 금액 관리는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예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등의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 본 사업은 2022년 12월 13일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으로(최초 사업시행 고시 2022.12.13.) 일부 규정은 최초 인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기간 및 흙막이 등의 가시설 공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 및 인공지반 면적, 녹지면적 등은 일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 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제고 등을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전이층 등),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단지명,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명칭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정화조, 배기관, 옥외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조경석 쌓기, 펜스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토목 및 건축옹벽, 난간, 펜스 등의 위치는 대지경계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인접 대지와와의 높이 차이 등으로 대지경계선에서 단지측으로 이격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부대복리시설, 단지 외부시설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등은 심의 의견 및 인·허가 승인 조건, 공사여건, 특화디자인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등은 설계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위치 및 면적, 개소, 형태 등이 계약자의 별도 동의없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 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전문위원회심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 협의결과 조건, 관계기관 심의결과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단지 내 조경수 식재계획과 조경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마감재료 및 대지경계 선형과 같은 사항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로교통소음 예측평가결과에 따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실내소음도 기준을 만족하며, 방음시설이 일부구간 설치되어있으나 추후 소음이 법적 기준 초과 시 그에 따른 방음시설이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일부 세대 등의 경우 이로 인해 조망 및 일조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는 관련 인·허가에 따라 공영주차장[(지하1층~지상6층, 442대 규모(환승주차장 406대, 문화 및 집회시설 36대) 세부계획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및 운영 등에 따른 소음, 진동, 교통혼잡 및 일조권, 조망권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경춘선(지상철로), 경춘로, 평내지하차도, 늘을1로, 늘을2로, 늘을1로16번길 등 인접에 따른 소음, 진동 및 교통혼잡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동측으로 평내호평역(경춘선), 서측으로 대명루천 아파트, 남측으로 지상철로(경춘선),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 북측으로 호평동 상업지역 등이 위치하여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부 및 동측부에는 경춘로, 경춘선(지상철로) 및 평내호평역 역사 등이 위치하고 있어 야간조명, 가로등, 소음, 진동, 조망권,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바깥의 도로, 완충녹지, 소공원, 인근 업무시설·주택·상가 및 기타 혐오시설 등 존치건물·존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 등이 감소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존치건물 및 존치시설 등이 인접하여 주변 소음, 먼지, 분진, 조망권, 세대간섭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인근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불편과 준공 시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 공개공지, 도로계획 및 도로관련 시설물, 경춘선(지상철로)관련 시설물 등은 별도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 등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 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 부지와와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조정 등의 방편으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 레벨 조정 등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위의 개발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 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본공사 시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업시행(변경)인가 등이 수반될 수
--	--

		있으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학교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 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다르며, 초등학교는 인근 평동초등학교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 중학교는 호평중학군, 고등학교는 관내 학생배치가 가능하나, 향후 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나 사업여건 변동, 인구수 및 학생수 변화, 학생배치 기준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계약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단지계획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등이 혼용되어 설계된 단지입니다. · 각 동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여 해당 시설의 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주민공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실외기 등이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점 업종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휴게공간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수종, 테마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 및 단지 내의 경사로, 단차 처리방안, 조경 계획 등은 본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상층 소방자동차 동선 및 전용구역선 등 위치는 담당 인·허가청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 및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로 진입하는 비상차량 동선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차공간의 바닥마감 및 레벨 등은 인·허가청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입주자 차량외 지상으로 진입 가능한 차량은 소방, 치안, 이사, 우편(택배), 폐기물 수거차량 등 입주민 공공이익과 관련된 차량만 진입이 가능하며 개별 사유로 지상에 차량 진입이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실과 협의하여 진입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DROP OFF ZONE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저층세대는 단지 인근 도로 및 지상철로와의 인접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침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물(쓰레기분리수거장, 재활용품보관소, D/A(환기구), 자전거보관소, 가스정압기, 주차장 램프 지붕 등) 등은 위치, 디자인 및 재질, 구조,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제연용 그릴창, 옥외 계단·경사로 및 지하 또는 지상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헬륨 등은 본공사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기계·전기실, 환기창, D/A(환기구) 등)과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이 주거동의 전·후측면 등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 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공사 시 규모, 위치, 개소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기계·전기실, 환기창, D/A(환기구) 등)과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이 주거동의 진입동선 전·후측면 등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 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공사 시 규모, 위치, 개소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변에는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환기구)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위치는 설계도서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 비주거 부분의 옥상 또는 인근 동 주변, 1층 필로티 공간 등에 급배기, 환기팬, 기계장비,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냄새, 분진,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저층의 경우 단지 내 옥상조경 및 산책로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음벽 및 경춘선, 평내호평역 역사에 의해 일조·채광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5층의 경우 단지 내 옥상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보행로 등이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사생활 침해, 일조·채광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조경 식재 및 시설물(녹지, 잔디, 수목, 전기·통신시설물(공용·외부조명 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물, 보도·차도 포장재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서비스 등에 관한 책임 및 발생 비용 등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 운동시설 등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시설물 명칭, 위치, 크기 등도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각 동 외부(1층)에 설치되며,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의 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거리, 세대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2. 본 계약물건의 계약 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3.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 D/A(환기구), 천창,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산책로 및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경비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4. 단지 내 주차장 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廻廊,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廻廊, D/A(환기구)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시선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등에 의해 일부 세대는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 시설물(출입구, 주차출입구, 경비실, 부대시설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야간조명,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블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쓰레기분리수거장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아파트용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 후 발생하는 제반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수경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 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장고 및 마감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테라스는 자연발생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최상층 일부 세대가 사용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타입주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동별	• 일부동에 B 등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반사 및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일부 세대 전·후면 옥상조경 내 대형수목 등 식재 설치 및 방음벽 설치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동별 일부 직각배치 또는 서로 마주보는 일부 세대는 사생활권(프라이버시 등)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배치도 및 분양홍보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사양은 각 동의 코어별 최고 층수에 따라 인증 및 속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5층의 필로티 출입구는 구조 및 천장 속 배관설치 높이 등에 따라 천장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5층의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어린이놀이터, 옥상조경, 부대복리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불빛에 의해 조망권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출입구와 인접한 각 동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출입구 구조물로 인해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일조·채광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해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 여건 등에 대해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어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 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통행 등으로 인해 소음 발생과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상부층은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펌프 작동에 의한 일부 저층세대의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하부(5층)에는 작은도서관·주민커뮤니티, 102동 하부(5층)에는 경로당·주민커뮤니티·라운지, 103동 하부(5층)에는 주민운동시설, 스크린골프, 다함께 돌봄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각 동 하부(1~4층)에는 기계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101동 하부(1층)에는 관리사무소, 103동 하부(1층)에는 어린이집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및 사생활(프라이버시 등)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층(옥상층 지붕, 난간, 조경,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프라이버시 및 조망권 침해, 소음, 진동,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4층~5층 조경 구간에 관계기관(소방)의 요청에 따라 에어매트 설치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교목은 식재할 수 없으며, 사생활(프라이버시 등)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5층 출입구 필로티 하부에 에어매트 보관함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 이동 및 설계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지붕 및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공용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명 및 빛의 산란, 소음, 진동 등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 펜트하우스세대 테라스에는 옥상구조물(기둥, 커튼월 등)이 설치되며 조명 및 빛의 산란, 소음, 진동 등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견복주택 내 설치된, CG, 모형, 사인물(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와 인접한 동의 저층부는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공용홀 내 창호의 개수와 크기가 주동마다 상이하므로 채광 및 환기가 불리한 세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창의 적용 위치는 층별,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건물 입면에 태양광 패널이 다수 계획될 예정이며,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수량 등)은 본공사 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외관계획	• 건본주택 내 설치된 CG, 모형, 사인물(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등) 등은 심의 및 인허가 승인자료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단지 외관 차별화를 위해 변경될 예정입니다. • 세대별 외부 창호의 형태, 재질, 크기, 색상 및 루버의 위치 및 크기 등은 심의 의견 및 인허가 승인 조건, 공사여건, 특화디자인 등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외관 및 색채, 마감, 동 출입구 및 저층부 마감 패턴, 옥탑디자인, 지붕디자인, 경관조명, 부대시설 외관 등의 세부 디자인은 단지 외관 차별화를 위해 변경될 예정으로 조감도, 건본주택의 모형도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측벽의 BI 설치 개수 및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2층~지상4층 저층부 입면에는 BIPV가 설치되며 설치용량 및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BIPV는 주거와 비주거로 구분하여 설치되며, 주거시설에서 이용되는 BIPV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서비스 등에 관한 책임 및 발생 비용 등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주동 외벽 등에 부분 장식물, 조명 및 별도 마감재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동의 외벽에 부착되는 사인물, 장식물은 건본주택 모형도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등),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옹벽, 석축,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본공사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조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주동,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저층부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외부그릴 등의 형태 및 색 등),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옹벽, 석축,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본공사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조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주차장	•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 세대에 대한 지상 및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하1층의 주차장 주출입구는 법적기준에 따라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하의 택배차량이 지정된 통로로 각 동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지하2~5층은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차로의 유효높이 2.3m 이상(주차공간은 2.1m 이상) 확보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층별, 구간별 높이는 일부 상이할 수 있고, 본공사 시 레벨 변경 및 각종 배관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높이 일부 구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는 102동,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102·103동 인근에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주차 출입구의 디자인 등은 홍보물 등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계획상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의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으로 승하차 시 이용에 불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을 실로 사용하거나 면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용 등 포함), 근린생활시설 등의 각종 배선, 배관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본공사 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충전 시 차량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근접 주차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 수량 및 사양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PIT 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 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 구획은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 및 주차 구획 등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 등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단지 내에 지역정압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의 소음 및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 지하층 및 지하층 주변에 환풍 또는 제연환풍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환풍 등은 본공사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발전기가 가동되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사업주체가 장애에 전기공급과 관련,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본 아파트 부지 내 지상 한전개폐기 설치 및 부지 무상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지내 한전패드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위치이동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MDF실은 분리되어있으나 방재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일부 장비 및 서버는 시설별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며,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및 전기요금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 TPS(통신실)는 필요한 층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법적 시설로서 그 위치 및 면적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CCTV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배 등으로 보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원패스 시스템은 공동현관문 자동열림 및 승강기 호출(로비층)이 가능하며 스마트폰과 무선통신으로 구현하는 방식(스마트폰 Key방식)으로 별도의 원패스키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입주자 출입카드(RF 방식)를 사용하여 수동 Tag 또는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공동현관 출입 가능) - 원패스 시스템의 경우 일부 스마트폰은 제조사 및 OS 정책에 따라 연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여 101동, 102동, 103동 옥상층 및 지상 5층 화단 인근(2개소)에 이동통신 설비용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지하 1층, 지상 16층, 지상 38층 EPS/TPS(각3개소)에 이동통신설비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으로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하며,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각 동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외부창호는 입면분할 창호(주방, 다용도실, 대피공간, 보일러실, P/H 테라스면 및 일부 창호는 제외)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동 창호는 구조 계산 결과에 따라 본공사 시 형태 및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창호 특성상 이삿짐 운반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창호 등은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형태 및 재질,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방화문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 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루버의 크기 및 사양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울철 밀폐된 생활 환경 속에서 음식 조리, 가슴기 사용, 실내 화분, 빨래 등으로 인해 실내 상대 습도가 40~5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창호 유리면 및 창틀 주변에 결로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므로, 주기적인 환기는 결로 현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단위세대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기본 제공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계약 체결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평면도와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각종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 단위세대 실내 천장고는 거실기준 2.4m이며, 우물천정, 실외기 및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과 욕실, 현관의 천장고는 각각 상이합니다. - 본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세대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커튼박스 높이 및 창호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고는 설비자재 설치 간섭에 따른 천장고 높이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스배관이 주방 상부장으로 지나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의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 배관은 세대 천장, 발코니 천장, PD 등을 관통하여 외부에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침실등이 침실 중심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 - 발코니 비확장(기본형) 세대의 경우 세대 내 창호 위치 및 크기는 차후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방향은 차후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일부타입의 다용도실 내 세탁기 설치위치는 드럼형의 경우 문열림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탁기 설치전 사용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축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등), 길이 및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 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 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옥상 테라스 세대의 테라스 창호 및 문의 크기, 형태 및 유리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테라스 출입구간 창호의 하부에 턱, 상부에 캐노피가 시공됩니다. - 옥상 테라스 세대의 각 세대 테라스는 위치 및 배치 여건에 따라 동일한 타입임에도 크기 및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면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 테라스 세대는 하부층 지붕에 의해 자연발생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유화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임의 개조하거나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하부층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인의 출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옥상 테라스 세대는 외부공간 활용 시 안전사고 및 방법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파트 공용부의 유지관리 등의 사유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테라스 외부공간에는 무동력환기팬, 각종 배기팬, 통기관 등 하부세대의 설비를 위한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테라스의 바닥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테라스 세대의 일부 창호를 출입의 용도로 이용하며, 이에 초래되는 불편함(창호 형식, 높이, 너비 등)은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옥상 테라스 세대의 외부 공간에는 옥상조경이 설치되어 흙먼지 등이 날릴 수 있으며, 옥상조경의 형태 및 위치, 크기는 변경될 수 있고, 유지관리의 사유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테라스 세대는 상부층의 낙하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 테라스 외부공간과 출입이 발생할 수 있는 세대는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의 사유로 창호의 크기, 형태, 난간 유무, 디테일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형의 단위세대라 하더라도 테라스 (옥외)출입여부에 따라 창호, 골조턱, 걸레받이 위치 및 사이즈가 일부 다르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 테라스는 본공사 시 세부 마감 및 디테일 개선에 따라 형태 및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테라스가 있는 경우 내부 발코니 창호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옥상 테라스가 형성되는 부위에는 우수 등의 처리를 위하여 선홀통 배관, 배수트렌치 등이 매립 또는 노출 시공될 계획이며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테라스가 형성되는 하부층 세대는 각종 설비(선홀통 배관, 배수트렌치 등)시공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테라스의 세대간 벽체 및 난간 설치 범위는 세대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벽체 및 난간의 형태, 크기, 재질,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테라스의 바닥은 배수를 위하여 경사 시공되며, 배수관련 설비가 설치됩니다. • 주택형, 세대 위치에 따라 레벨차이로 인하여 테라스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 테라스 세대의 상부에는 별도의 지붕이 설치되지 않으며 낙하물, 추락 등의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 테라스 세대의 외부공간 출입 PL창호는 안전상의 이유로 잠금 손잡이 대신 크레센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옥상 테라스 세대 외부공간에 실외기가 노출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진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테라스의 외부공간(외벽부분) 일부 구간에는 유리벽(커튼월)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구조물 노출, 빛반사, 시야차단, 각종 소음(소리울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 세대가 기본형(비확장) 세대인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홀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사이즈가 상이합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탁기와 보일러 설치공간이 협소한 경우 공간을 고려한 세탁기 제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건축계획으로 인한 공간의 협소이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탁기 개폐 방향에 따른 발코니 수전 및 발코니 출입문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조기(건조기 일체형 세탁기 포함) 설치 시 보일러 점검 및 교체에 따른 건조기 또는 세탁기의 이설 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의 수직 설치 시 창문 개폐가 불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각 세대는 화재 시 피난을 위해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화재 시 해당 피난시설의 사용을 위해 물건적치 등을 금하여 대피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짝수층과 홀수층이 교차되어 실외기실 내부에 설치되고 발코니 상부에 피난용 사다리가 노출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 세대는 비상 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상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 소음 및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 강제 오픈시 아래 세대의 월패드와 연동되어 비상경보음이 송출될 수 있습니다.
	가구, 마감재	•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가구장 상부 몰딩 및 복도 아트월 또는 시트판넬의 형태는 본공사 시 마감 개선을 위해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수전 위치는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수납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온수분배기 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음) • 세대 내부의 가구(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욕실장 후면 타일 미시공, 불박이장, 신발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시공 등) • 거실 내부에 면하는 출입문(현관문, 주방 발코니문, 외부창호 등 제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끼임 방지장치가 제공되며, 제품 사양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경,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공간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침 방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 등이 있을 수 있음) • 주방상판은 제품 특성상 정합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 및 나눈 부위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 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대피공간 도어, 발코니 도어 등)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타일 마감재 등에 포인트 타일 요철로 인해 줄눈마감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아트월, 현관바닥, 욕실, 다용도실 바닥 등의 타일 나누기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가구는 각 평형별 크기가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또는 모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찰재류는 녹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욕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재료분리대 높이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에 시공되는 공장 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계설비	• 단지 내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될 예정으로 향후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일부 구간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TV폰 배선이 후면기구에 연결됨에 따라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렌지후드 환기덕트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상부장 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점검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후드 설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실외기실에는 냉매배관 및 드레인 등이 노출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타입에 따라서 주방상판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 시스템 및 욕실 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동체감지기는 6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침실(출입문 뒤편) 중 한 곳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제어 스위치 기능 중 가스차단 기능을 실행할 경우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복구를 할 경우에는 주방에서 입주자가 직접 수동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호출기능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호출기능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안방(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별도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인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선택시 안방 및 거실의 에어컨 냉매배관(매립), 실내기용 콘센트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유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 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 선택(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주방/드레스룸 빌트인 가전, 침실 불박이장 등)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위치 및 설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침실에 적용되는 전자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제어의 통합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제어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바닥배수구, 오수배관 입상, 수전금구류, 액세서리류, 위생도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의 전화 수신 기능은 국선전화를 가입한 세대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 외부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 현관 창고,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욕실 및 다용도실의 경우, 마감 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 난방이 시공됩니다. (욕실의 욕조하부,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적용되지 않음) • 급수급탕 분배기는 욕실천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급수, 급탕 분배기 설치부위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되며, 본공사 시 시공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홈통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슬라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세탁실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 세탁배수 배관은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하부세대에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우수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에어컨 운전시 실외기실 외부 그릴이 항상 열려 있는지 확인 후 운전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 하지 않은 상태의 문제 발생시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 전기설비 마감재(분전반, 통신단자함,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기구는 전열교환 환기유닛 등 타 설비기구 등과 간섭시 조명기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쿡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프라(콘센트 및 배관/배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소비전력 3.5kW 초과하는 전기쿡탑을 개별적으로 설치할 경우 입주자 부담으로 별도 전기공사가 필요함입니다. • 가구 및 가전용 간접 조명(주방장 라인조명, 화장대거울 간접조명 및 주방후드 조명 등)은 자체 ON/OFF로 제어되며, 일괄제어 스위치의 일괄소등 동작시에는 연동하여 소등되지 않습니다. • 팬트하우스(166P, 171P, 173P) 세대는 온수분배기 및 보일러가 2대 이상이 설치되며, 메인 온수분배기 1대만 월패드와 연동가능하므로 해당 구간만 월패드를 통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단, 각실의 온도조절기를 통해서도 실별 난방이 가능함) • 홈네트워크 외부제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전용 인터넷 회선 설치 비용 등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홈플랫폼과 연동하는 홈IoT 가전제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인이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을 설치하여야 하며(통신사 무관),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온도에 따라 자동 개폐 가능한 무전원 방식의 환기 그릴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홈플랫폼	• 홈닉 홈플랫폼 서비스(이하 “홈플랫폼 서비스”)는 홈플랫폼 제공업체 삼성물산㈜(이하 “홈플랫폼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홈IoT, 생활정보, 라이프스타일 등 서비스를 단일 앱으로 통합하여 입주인에게 새로운 User Experience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홈닉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홈닉APP”)에서 세대 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등 제어가 가능하며, 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스마트 가전제품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홈플랫폼 제공업체”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하며, 입주시 일부 기능은 “홈플랫폼 제공업체”의 이용약관에 준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홈플랫폼 서비스” 사용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작일을 기준으로 “홈플랫폼 제공업체”의 무상서비스 기간(24개월 또는 36개월, “홈플랫폼 제공업체” 정책에 따라 상이함)이 지난 날부터 서비스 신청 입주인에 한하여 월과금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또는 별도 청구) • “홈플랫폼 서비스”는 추후 성능 개선, 입주 시점의 기술 변화 등의 사유로 일부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서비스의 제공이 종료될 수 있고, “홈플랫폼 제공업체”의 사업정책에 따라 3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홈플랫폼 제공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홈플랫폼 서비스”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플랫폼 서비스” 관련하여 시공사는 기본 인프라만 제공하는 것으로 “홈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홈플랫폼 제공업체”의 이용약관에 준합니다. • “홈플랫폼 제공업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천장 높이는 설비자재와의 간섭 등으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기본제공 품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은 공간 및 기본 마감재만 제공되며, 내부 집기류, 이동가구 및 장비 등은 제외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 관리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제공되며, 마감재 및 기본 제공 품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의 일부 공간은 입주시 A/S센터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구조, 창호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남양주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내·외·옥상부 공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과 외부도로와의 레벨 차이로 인하여 근린생활시설 출입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이용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각 동 하부층(1~4층)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의 간판은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승인권자와의 사전협의 후(지침준수 등) 설치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 및 주차 구획 등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 등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분리수거장으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냄새 및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1~4F), 운동시설(3F), 문화 및 집회시설(4F) 등은 별도 분양대상으로 각종 시설의 위치, 형태, 명칭, 용도 등은 향후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	일반사항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 및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본공사 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모형의 문주 및 주차장 진입 상부 구조물, 주동 출입구,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부대복리시설 등은 본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 설치 위치, 형태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는 74A타입, 84A타입, 84B타입 유닛이 건립되며, 건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당사 홈페이지, 분양홍보물 및 모형도 등을 통해 차이점을 청약 및 계약 이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으나,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공사 시 시공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건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 기준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주동 옥탑층 및 측벽의 층수 표기 사항은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공사 시 KS조건 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건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공사 시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분양홍보물,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및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신고 및 승인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건본주택의 VR영상 등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영상이므로 사이버 건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안내 등은 청약 및 계약 이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단지 주변현황, 본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온도조절기, 스위치,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는 사업시행(변경)인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고, 추후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없이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 없는 타입의 조명기구는 타입에 따라 건본주택의 조명기구와 위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유닛 내에 설치되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건본제품으로 본공사 시 에어컨 크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시품목	•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공사 시 시공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시 제외됩니다. • 건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 품목 뿐 아니라 유상옵션 품목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마감사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건축부문 설계기준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제7조제3항제2호)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7912025-101-0000500 호	₩ 279,874,0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시행자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여야 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상호	(주)서린디앤씨	(주)아이비엔지니어링	동양종합엔지니어링(주)
금액	3,937,967,000	820,633,000	1,217,166,739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8조,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공동주택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남양주 센트럴 N49 개발사업 주상복합건축물
2. 신 설 자 : 센트럴N49에프에프이 주상복합
3.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센트럴 660-6번지
4. 상 용 등 급

가. 표준 관련 등급		가. 환경 관련 등급(예외)	
에너지효율	환경친화적	환경친화적	
1. 방열차단 성능	★★★★	1A. 방열차단 성능	★★★★
2. 단열 성능	★★	1B. 단열 성능	★★
3. 단열 성능	★★★★	20. 단열 성능	★★★★
4. 단열 성능	★★★★	21. 단열 성능	★★★★
5. 단열 성능	★★★★	22. 단열 성능	★★★★
6. 단열 성능	★★★★	23. 단열 성능	★★★★
7. 단열 성능	★★★★	24. 단열 성능	★★★★
8. 단열 성능	★★★★	25. 단열 성능	★★★★
9. 단열 성능	★★★★	26. 단열 성능	★★★★
10. 단열 성능	★★★★	27. 단열 성능	★★★★
11. 단열 성능	★★★★	28. 단열 성능	★★★★
12. 단열 성능	★★★★	29. 단열 성능	★★★★
13. 단열 성능	★★★★	30. 단열 성능	★★★★
14. 단열 성능	★★★★	31. 단열 성능	★★★★
15. 단열 성능	★★★★	32. 단열 성능	★★★★
16. 단열 성능	★★★★	33. 단열 성능	★★★★
17. 단열 성능	★★★★	34. 단열 성능	★★★★
18. 단열 성능	★★★★	35. 단열 성능	★★★★
19. 단열 성능	★★★★	36. 단열 성능	★★★★
20. 단열 성능	★★★★	37. 단열 성능	★★★★
21. 단열 성능	★★★★	38. 단열 성능	★★★★
22. 단열 성능	★★★★	39. 단열 성능	★★★★
23. 단열 성능	★★★★	40. 단열 성능	★★★★
24. 단열 성능	★★★★	41. 단열 성능	★★★★
25. 단열 성능	★★★★	42. 단열 성능	★★★★
26. 단열 성능	★★★★	43. 단열 성능	★★★★
27. 단열 성능	★★★★	44. 단열 성능	★★★★
28. 단열 성능	★★★★	45. 단열 성능	★★★★
29. 단열 성능	★★★★	46. 단열 성능	★★★★
30. 단열 성능	★★★★	47. 단열 성능	★★★★
31. 단열 성능	★★★★	48. 단열 성능	★★★★
32. 단열 성능	★★★★	49. 단열 성능	★★★★
33. 단열 성능	★★★★	50. 단열 성능	★★★★
34. 단열 성능	★★★★	51. 단열 성능	★★★★
35. 단열 성능	★★★★	52. 단열 성능	★★★★
36. 단열 성능	★★★★	53. 단열 성능	★★★★
37. 단열 성능	★★★★	54. 단열 성능	★★★★
38. 단열 성능	★★★★	55. 단열 성능	★★★★
39. 단열 성능	★★★★	56. 단열 성능	★★★★
40. 단열 성능	★★★★	57. 단열 성능	★★★★
41. 단열 성능	★★★★	58. 단열 성능	★★★★
42. 단열 성능	★★★★	59. 단열 성능	★★★★
43. 단열 성능	★★★★	60. 단열 성능	★★★★
44. 단열 성능	★★★★	61. 단열 성능	★★★★
45. 단열 성능	★★★★	62. 단열 성능	★★★★
46. 단열 성능	★★★★	63. 단열 성능	★★★★
47. 단열 성능	★★★★	64. 단열 성능	★★★★
48. 단열 성능	★★★★	65. 단열 성능	★★★★
49. 단열 성능	★★★★	66. 단열 성능	★★★★
50. 단열 성능	★★★★	67. 단열 성능	★★★★
51. 단열 성능	★★★★	68. 단열 성능	★★★★
52. 단열 성능	★★★★	69. 단열 성능	★★★★
53. 단열 성능	★★★★	70. 단열 성능	★★★★
54. 단열 성능	★★★★	71. 단열 성능	★★★★
55. 단열 성능	★★★★	72. 단열 성능	★★★★
56. 단열 성능	★★★★	73. 단열 성능	★★★★
57. 단열 성능	★★★★	74. 단열 성능	★★★★
58. 단열 성능	★★★★	75. 단열 성능	★★★★
59. 단열 성능	★★★★	76. 단열 성능	★★★★
60. 단열 성능	★★★★	77. 단열 성능	★★★★
61. 단열 성능	★★★★	78. 단열 성능	★★★★
62. 단열 성능	★★★★	79. 단열 성능	★★★★
63. 단열 성능	★★★★	80. 단열 성능	★★★★
64. 단열 성능	★★★★	81. 단열 성능	★★★★
65. 단열 성능	★★★★	82. 단열 성능	★★★★
66. 단열 성능	★★★★	83. 단열 성능	★★★★
67. 단열 성능	★★★★	84. 단열 성능	★★★★
68. 단열 성능	★★★★	85. 단열 성능	★★★★
69. 단열 성능	★★★★	86. 단열 성능	★★★★
70. 단열 성능	★★★★	87. 단열 성능	★★★★
71. 단열 성능	★★★★	88. 단열 성능	★★★★
72. 단열 성능	★★★★	89. 단열 성능	★★★★
73. 단열 성능	★★★★	90. 단열 성능	★★★★
74. 단열 성능	★★★★	91. 단열 성능	★★★★
75. 단열 성능	★★★★	92. 단열 성능	★★★★
76. 단열 성능	★★★★	93. 단열 성능	★★★★
77. 단열 성능	★★★★	94. 단열 성능	★★★★
78. 단열 성능	★★★★	95. 단열 성능	★★★★
79. 단열 성능	★★★★	96. 단열 성능	★★★★
80. 단열 성능	★★★★	97. 단열 성능	★★★★
81. 단열 성능	★★★★	98. 단열 성능	★★★★
82. 단열 성능	★★★★	99. 단열 성능	★★★★
83. 단열 성능	★★★★	100. 단열 성능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 축 물 명	남양주 센트럴 N49 개발사업 주상복합건축물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 관련 유의사항

- 분양대금은 지정된 분양대금수납계좌와의 입금에 대하여는 입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본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있어 분양수입금 관리를 위해 “자산관리신탁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분양대금은 “자산관리신탁사”가 관리하고, 본 주택은 사업주체의 책임으로 분양계약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인바, 분양계약자는 이를 확인한다.
- 공급계약서상 시행자 및 매도인의 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있고, “신영부동산신탁㈜”은 사업주체로부터 위임받은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한다.
- 공급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분양계약자는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신영부동산신탁㈜”은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신영부동산신탁㈜”는 날인의 의무가 없으며 “신영부동산신탁㈜”의 날인이 없어도 공급계약은 유효하다.
- “신영부동산신탁㈜”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수입자로서 분양대금 수납업무만을 담당하고,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에 관한 분쟁(분양계약 해지, 분양대금 반환 등)에 대하여 “신영부동산신탁㈜”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인지하고 동의한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자금관리자
상 호	센트럴엔49피에프비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엔아이건설그룹	두산건설 주식회사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284111-0243596	284111-0261374	110111-0194277	110111-7126835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1길 25, 604,605호(다산동)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로 20, 1309호(병점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 본 입주자모집공고상 사업주체인 센트럴엔49피에프비(주)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해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및 토지소유자로서 주택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토지소유자인 센트럴엔49피에프비와 등록사업자인 (주)유엔아이건설그룹이 공동사업주체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자는 센트럴엔49피에프비(주)와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두산위브더제니스평내호평역n49.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견본주택(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59-10) | ☎1600-4935

■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 약관에 따르며,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